인천대학교 INCHEON NATIONAL UNIVERSITY

2026-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

1. 교내장학금 신청대상 : 8학기 이내 재학생(초과학기자 신청 불가)

※ 선출직 간부장학금: 8학기 초과자 지급가능

※ 교내장학금 이중수혜 및 오(誤)지급 시 학생지원과로 반환해야함

2. 교내장학금 추천기간

구분	신청/추천기간		장학금 종류
	1학기	2학기	
감면	1월 (등록금고지전)	7월 (등록금고지전)	학업우수, 이공계인력육성, 체육특기, 보훈, 한마음, 북한이탈주민, 외국어우수, 고시(최종합격), 간부, 가족사랑 등
지급	3월 중	9월 중	체육특기, 공로, 고시, 봉사(지정/일반), 간부 등
	4월 중	10월 중	보훈, 한마음, 북한이탈주민, 간부, 가족사랑, 지방자치발전, 인천대사랑(도전/열정) 등
	5월 중	11월 중	우수신입생(생활비), 공로, 고시, 외국어우수 등

※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, 해당 장학금 신청/추천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

※ 상세 기간 및 내용은 대학홈페이지> 인천대소식> 공지사항> 장학금> 교내장학금 확인

3. 교내장학금 신청 유의사항

○ 감면 장학금 신청 전 확인사항

◦ 감면 장학금 승인 시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 감액 처리 반영되므로 부모님 회사 등록금 지원 여부 등 확인

◦ 감면 장학금 승인 후 **등록금 납부한 경우 해당 장학금 포기 불가**

※ 감면장학금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, 장학금 포기신청서 제출

○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

◦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만 승인 및 지급받을 수 있음(감면의 경우 예외)

◦ 분납 신청자의 경우에도 등록금이 전액 완납되어야만 지급

○ 교내장학금 감면·지급 확정 후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

◦ 예1) 학업우수장학금 감면 확정 이후 해당 장학금을 포기하고 외국어우수장학금으로 변경 불가

예2) 외국어우수장학금(B) 수혜 후 외국어우수장학금(A) 변경 불가

○ 교내장학금 수혜자가 교외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

- 교외장학금은 교내장학금 포기 후 수혜 가능

※ 교내장학금 추천 변경은 불가하므로 교외장학금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필수

◦ 교내장학금 포기하고 교외장학금 선택하는 학생은 **'교내장학금 포기신청서'**를 **공문**으로 제출하며, 포기한 교내장학금은 번복 불가

○ 휴학생 및 휴학 예정자의 장학금 신청

- 휴학생 : 장학금 신청 불가
- 휴학 예정자 : 장학금 신청 후 **등록금 납부기간 내 해당학기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**하여야만 장학금 감면·지급 가능

※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> 학적> 개인학적조회> 등록 : 해당학기 '완납' 확인

◦ 간부 및 봉사장학금의 경우 등록휴학 하더라도 장학금 감면/지급이 불가능(수혜 시 반납)

○ 전과한 학생 : 전과한 첫 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수혜 불가

○ 교내장학금 반납

-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내장학금 반납

○ 교내장학금 추천 관련 공인외국어성적은 입학 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

○ 직전학기 수강한 모든 과목이 이수인정(Pass/Fail) 과목인 경우

- 외국어우수, 공로, 인천대사랑, 가족사랑 등: 성적이 Pass로 평점평균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 적용

◦ 2025-1학기 12학점 이수 후 평점평균 3.5 취득 & 2025-2학기 현장실습 12학점 이수 후 성적이 Pass인 경우, 2025-1학기 성적 적용

◦ 수강신청 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/Fail로 기재되는 경우, 산출된 평점평균 적용

→ 직전학기 현장실습 12학점 PASS 및 OCU 1과목 3.5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로 반영

○ 직전학기에 교환학생이었던 경우, 장학금별 최종 추천기간까지 성적 미산출시 성적이 산출된 최근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

○ 자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(2019-1학기 신(편)입생부터)

○ **다년장학금의 경우도 매 학기 장학금 신청 필수**

- 보훈, 북한이탈주민, 한마음, 고시, 수시-우수, 입학.단과수석, 우수신입생(생활비성) 등의 장학금 대상자도 **학생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 필수**

○ **미추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**

- 신청내역이 「학과/부서대기」로 되어 있는 경우 학과/부서에서 추천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학과/부서에 문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

4. 장학금별 유의사항

○ **외국어우수장학금**

-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공인어학성적 제출
- 공인어학성적표상 유효기간이 추천기간 마감일까지 남아있는 학생

(예시) 학과 추천기간이 2026.01.12. ~ 01.16.인 경우 유효기간이 추천 마감일(2026.01.16.)까지 남아있는 학생

○ **인천대사랑장학금(도전/열정)**

- 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·Ⅱ·다자녀 신청자 중 소득구간이 확인된 자

○ **봉사(일반)장학금**

- 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·Ⅱ·다자녀 신청자

① 근무기간 : 정해진 개월 근무

② 근무시간 : 09:00 ~ 18:00까지

③ 토요일, 공휴일 근무 불가

※ 교내봉사 시작일 기준, 다음달 15일 전후로 장학금 지급

※ 매월 100시간까지 입력 가능(단, 하루 8시간 이상 입력 불가)

○ **공로장학금**

- 기간 내 수상한 실적에 대하여 신청(대회개최 관련공문 및 수상실적(상장)을 첨부)

◦ 1학기 : 전년도 6월 ~ 당해연도 5월 수상내역
◦ 2학기 : 전년도 12월 ~ 당해연도 11월 수상내역
※ 단, 수상은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수상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

- 장학금액

구분	단체	개인
국제 각종대회 입상자	70만원	100만원
국내(전국규모) 각종대회 입상자	30만원	50만원
서울주요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 및 권위 있는 문예지 추천자	해당없음	100만원

- 휴학 중 취득실적 : 당해학기 복학생은 휴학학기 중에 취득한 수상내역도 인정

  ◦ 2025-1, 2025-2학기 휴학 중 국내(전국규모)·국제대회 수상 후 2026-1학기 복학한 경우
  : 2025-1, 2025-2학기 중 취득한 실적으로 2026-1학기에 신청가능

- 10개 미만 컨소시엄 주관 대회의 수상실적(2026.3월 수상부터), 명확한 상격이 없는 단순 표창 등은 인정하지 않음

○ 체육특기장학금

- 제출서류 : 경기실적증명서

○ 보훈장학금

- 제출서류 : (본인/배우자)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,
  (자녀/손자녀*)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*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
- 직전학기 평균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(본인 및 배우자는 제한없음)
-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재입학 대상자(자녀 등)는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를 재입학 당해학기에 재발급 받아서 제출
- 8학기 동안 수혜 가능하며, 종전 대학에서 보훈장학금을 수혜한 경우도 전체 수혜 횟수에 포함(본인 및 배우자는 제한없음)
- 직전학기 평균성적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도 수혜 횟수는 추가됨

○ 간부장학금

- 1차 추천 : 타 등록금성 교내장학금을 받지 않는 간부장학생
- 2·3차 추천 : 1차에 미추천된 간부장학생

  ※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경우 간부장학금 수혜 불가
- 장학금 수혜 후 학기 중간에 직책 수행을 종료할 경우(휴학, 자퇴, 제적 등) :
  장학금 전액 반납
- 장학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휴학, 질병 등 부득이 직책 수행이 어려운 경우 :
  수업일수 1/3선 이내 장학생 변경 (학생지원과에 변경요청 공문 발송)

  ※ 당해학기 교환학생 간부장학금 수혜 불가

  ※ 선출직 간부장학금 8학기 초과자 지급가능

  ※ **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,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(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요망)**

○ 가족사랑장학금

- 2명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, **학생신청일 기준 신청학생과 가족 모두 등록금을**

완납하고 재학 중이어야 함

- 성적기준은 장학금 신청자만 해당
-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부모명의로 발급,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 제출

○ 한마음장학금

- 제출서류 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- 종합장애등급 :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(구) 장애등급 1, 2, 3급)

○ 북한이탈주민장학금

- 지원대상 :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(한국국적 취득자)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- 제출서류

본인	자녀
① 학력인정증명서* 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① 학력인정증명서* 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자녀명의 ④ 부모(택1)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* 학력인정서류

◦ 북한학력(전문대졸이상) : 학력인정증명 공문
◦ 북한학력(고등학교) : 학력인정증명서
◦ 국내고등학교 졸업 :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◦ 검정고시 합격자 :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
◦ 해외고등학교졸업(예정)자 : 아스포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(예정)증명서

- 성적기준 : 직전 2개 학기 연속 평균성적 70점미만 또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, 장학금 지원 불가

※ **성적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며, 타대학에 신·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**

- 지원범위 :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
- **유의사항**
  - 2022년 이후 신·편입생은 입학 후 1년 내 법정의무교육 미수강시,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(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참고)
  - 법령개정으로 신규대상자가 된 재학생의 경우, 법령개정 전에 종료된 학기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불가

인천대학교
INCHEON NATIONAL UNIVERSITY

교내장학금 신청/추천 오류 사례

연번	장학금명	오류내용	점검사항
1	가족사랑	장학금 신청자 본인과 가족(형제자매 등)을 동일하게 입력한 경우	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학번을 각각 구분하여 입력
2		첨부서류 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	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또는 "*" 처리
3	외국어우수 등	등록금성 장학금(국가장학금 등)을 전액 수혜 받은 이연복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	복학 전 등록금성 장학금(등록금 전액) 수혜 여부 확인
4	인천대사랑 등	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한 경우	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Ⅰ·Ⅱ·다자녀 유형 신청 후, 소득구간 확인
5	공로	지역대회에서 입상한 경우	전국 또는 국제대회 수상내역만 인정
6	학업우수/간부 등	감면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납부 이후 장학금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	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감면 장학금 포기가 불가하므로, 등록금 납부 전 장학금 감면 내역 확인

인천대학교
INCHEON NATIONAL UNIVERSITY

장학금 포기 신청서

구 분	☑ 교내장학금 ☐ 교외장학금 ☐ 국가장학금 ☐ 기타( ) ※ 해당되는 부분에 ☑ 표시		
포기희망 장학금명		학 기	2026-1학기
성 명		학 번	
학과(부)		연 락 처	
포기사유	[사유입력]으로 인해 [포기장학금명]장학금을 포기합니다.		

위와 같은 사유로 장학금 포기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인천대학교 총장 귀하